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제안이유

2001년도 구조조정시 협의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통일된 직명으로 정비하고 사회복지분야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 주요골자

【명칭변경】

- 농기계교관 ⇒ 농기계교육교관
- 교사 ⇒ 수공예강사, 예절교육강사, 요리강사
- 공기업요원 ⇒ 공기업회계원
- 화생방요원 ⇒ 화생방관리원
- 위생감시원 ⇒ 보건위생감시원
- 공연기획섭외요원 ⇒ 공연기획홍보원
- 영화기사 ⇒ 홍보영상물제작원
- 기타 레크레이션요원 ⇒ 레크레이션지도사

【삭제】

- 여성복지담당
- 아동복지지도원
- 부녀상담원
- 상담업무담당(6급 상당)
- 분장사
- 체육교관
- 사회복지전문요원
- 인력개발과장
- 여성개발업무담당(6급 상당)
- 직업보도업무담당(6급 상당)

☐ 참고사항

- 도 행정 12200 - 98(2001. 7. 23) 2001년도 시군 구조조정 협의(승인) 사항 통보
- 도 행정 12200 - 11777(2001.12.3)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전환 지침 통보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농기계교육교관
2. 통역원
3. 수공예강사
4. 예절교육강사
5. 요리강사
6. 공기업회계원
7. 화생방관리원
8. 보건위생감시원
9. 공연기획홍보원
10. 홍보영상물제작원
11. 레크레이션지도사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인력개발과장 5급상당, 여성복지담당 6급상당, 여성개발업무담당 6급상당, 직업보도업무담당 6급상당, 상담업무담당 6급상당, 부녀상담원 7·8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지정)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지정)--- ----- -----.
1. <u>여성복지담당</u>	(삭 제)
2. <u>아동복지지도원</u>	(삭 제)
3. <u>부녀상담원</u>	(삭 제)
4. <u>농기계교관</u>	1. <u>농기계교육교관</u>
5. <u>상담업무담당(6급상당)</u>	(삭 제)
6. <u>통역원</u>	2. -----
7. <u>교사</u>	3. <u>수공예강사</u>
	4. <u>예절교육강사</u>
	5. <u>요리강사</u>
8. <u>공기업요원</u>	6. <u>공기업회계원</u>
9. <u>화생방요원</u>	7. <u>화생방관리원</u>
10. <u>위생감시원</u>	8. <u>보건위생감시원</u>
11. <u>공연기획섭외요원</u>	9. <u>공연기획홍보원</u>
12. <u>영화기사</u>	10. <u>홍보영상물제작원</u>
13. <u>분장사</u>	(삭 제)
14. <u>체육교관</u>	(삭 제)
15. <u>사회복지전문요원</u>	(삭 제)
16. <u>기타 레크레이션요원</u>	11. <u>레크레이션지도사</u>
17. <u>인력개발과장</u>	(삭 제)
18. <u>여성개발업무담당(6급상당)</u>	(삭 제)
19. <u>직업보도업무담당(6급상당)</u>	(삭 제)